[서식 예] 위약금청구의 소(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약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정한 연 1 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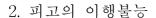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0. O. O.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OO시 OO구 OO동 OO 대지 및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함)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5,000,000원은 20ㅇㅇ. ㅇㅇ. ㅇㅇ.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 ○○. ○.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 대한 매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외 ◈◆◈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소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

한편, 원고와 피고는 계약당시에 매도인인 피고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중매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부동산의 소유 권이 소외 ◈◈◈에게 이전됨으로써 이행불능이 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000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 소멸시효일람표. MANAKA PARKA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타	 ・ 판설시가 당달된 달구터 2구 이내(인사오당법 제3593도 제1명) ・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채무의 이행이행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1997. 6. 10. 선고 95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기 전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